

건설기계 부품인증(변경)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:)		
건설기계 부품명			
형식			
규격			

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13에 따라 건설기계 부품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,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2. 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3.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4. 부품제작사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관련 자료	수수료 495,000원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

처리 절차

